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년월일 : 2003. 9. 2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2003년 8월 31일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개정을 요구하는 고용직공무원 및 직장협의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하므로써 해당직원들의 사기를 양양하는 한편,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유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7세”로 함. (안 별표)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근무상한연령 “53세”를 “57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
1종	지도원	53세	-----	-----	57세
비고 : (생략)			비고 : (현행과 같음)		